

## 文化財用 木材의 需給 및 流通 實態<sup>1</sup>

裴在洙<sup>2</sup> · 金長政<sup>2</sup> · 朴璵碩<sup>2</sup> · 白乙善<sup>2</sup>

### A Study on the Status of Supply-Demand and Procurement of the Timber for Wooden Cultural Properties<sup>1</sup>

Jae Soo Bae<sup>2</sup>, Wae Jung Kim<sup>2</sup>, Kyung Seok Park<sup>2</sup> and Eul Sun Baik<sup>2</sup>

#### 요 약

본 연구는 문화재용 목재의 수급 및 유통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문화재용 목재는 문화성, 공공성, 고품질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 특성으로 인해 일반용재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98년 문화재용 목재 수요는 약 1.8만m<sup>3</sup>이며, 그 중 특수재 및 특대재는 총 수요의 35.5%인 6,300m<sup>3</sup>로 추정되었다. 문화재용 목재공급은 주로 국유림(16.7%) 및 강원도 민유림(65.7%)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강원도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소나무 대경목의 자원 부족으로 문화재 수리 시 외재가 일부 대체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용 목재수요는 증가할 것이나 대경재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문화재용 목재수급을 통한 목조건축문화재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대경재 생산을 목표로 한 산림경영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supply-demand and procurement of the timber used for wooden cultural properties. Because people require the high quality pine timber with cultural assurance and public function for cultural properties, it is priced far higher than ordinary construction timber. The timber consumption was estimated at 18 thousand cubic meter in 1998, of which the large sized log(LSL) with the small end diameter over 30cm consisted of 35.5%, equivalent to 6,300 cubic meter. Majority of the timber was supplied from private forest located in Kangwon-do and national forest, accounting for 65.7% and 16.7%, respectively. Recently the supply more and more relied on timber logged in Kangwon-do. Owing to lack of domestic supply of LSL class timber, part of the volume has been substituted by import log. Most of carpenters working on cultural properties thought that supply of LSL timber would hardly meet the increasing demand for uses of wooden cultural properties. Finally, in order to uphold the tradition of wooden cultural proper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orest management plan which aim at producing large size high quality pine timber.

*Key words : timber for wooden cultural properties, timber supply and demand, high quality pine timber*

#### 서 론

##### 1. 문제 제기

문화재란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의 가치는 당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후세에게 원형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목재로 만들어진 건축문화재는 시간이 경과함

<sup>1</sup> 接受 1999年 12月 12日 Received on December 12, 1999.

<sup>2</sup> 임업연구원 Forest Research Institute, Seoul 130-012, Korea(E-mail : forhis@chollian.net)

에 따라 해충의 피해를 받거나 내구성이 떨어져 원형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수리<sup>1)</sup>를 시행하여 문화재의 원형을 유지·계승할 의무가 있다.

문화재의 수리는 문화재가 지닌 전통성, 문화성, 역사성 때문에 원형유지를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이때 원형보존이란 전통 건축양식의 보존뿐만 아니라 원형 소재의 보존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목조건축문화재(특히 궁궐, 고택)의 주요 부재가 대부분 국산 소나무 대경재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리 시 국산 소나무 대경재 수요를 낮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용 소나무의 꾸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만한 양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관계로, 특정 부재의 대체재로서 외재 사용이 인정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민들은 우리 문화의 전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sup>3)</sup>. 문화재의 원형은 소나무 기둥인데 수리 시 대체목으로 외재나 다른 수종을 사용하는 것은 문화재의 보존원칙을 어기고 원형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목조건축문화재 수리 시 외재를 사용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과연 문화재용 목재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규격은 어떠한지, 우리 나라 산림에서 어느 정도 문화재용 목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목조건축문화재의 합리적인 보존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문화재용 목재의 수급 및 유통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결론을 대신하여 문화재용 목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표 1과 같이 산림청과 문화재청의 협조와 자료를 통해 문화재용 목재의 연간 소비량과 국내 공급량을 파악하였다<sup>4)</sup>. 문화재용 목재의 유통경로와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국산 문화재용 목재를 취급하는 주요 제재소를 직접 방문하여 청취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용 목재의 수급 및 유통실태를 분석하였다.

표 1. 이용자료 및 자료출처

연구항목	이 용 자 료	자료출처
수 요	- 잠재수요 : 지정문화재목록 (목조건축문화재 파악) - 실질수요 : 문화재수리보고서 [목공사] 파악	- 문화재청 - 문화재청, 지자체
공 급	- 잠재공급 : 산림자원보고서 (V영급 이상 산림자원) - 실질공급 : 국산재 생산 및 이용실태조사	- 임업연구원 - 산림청
유통	- 유통경로파악 : 문화재수리업자(63) 및 제재소	- 설문조사

**본 론**

**1. 문화재용 목재의 특성**

문화재용 목재의 특성은 문화성, 공공성, 고품질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문화재용 목재의 가장 큰 특성은 문화성에 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목조건축문화재 중 궁궐 및 고택 등은 우리 나라 소나무로 대부분 지어지고 수리되었다<sup>5)</sup>. 따라서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소중한 목조건축문화

1) 문화재의 수리(修理)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본 논문에서는 목재가 직접 사용되는 보수·복원으로 수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2) 보수·보충 목재의 수종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하되 기존과 동일한 수종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기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수종 또는 외국산 목재를 쓸 수 있다(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제6장, 목공사, 6-2-3).  
3) 경북궁 복원사업에 젖은 수입목재 사용(중앙일보 1999년 8월 21일자), 경북궁 내 흥례문 등 복원중인 전각의 기둥이나 대들보로 쓰인 특대재의 27% (185m<sup>3</sup>)를 수입 미송 사용(문화일보, 1999년 8월 20일자).

4) 문화재용 목재의 광역자치단체별 사용 실적은 문화재청 문화재기술과와 강원문화재과의 협조로 수집되었다. 자료 수집에 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지면으로나마 감사드린다.  
5)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재의 교체 시 같은 재질, 재종, 형태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원자재의 수종을 조사하는지는 의문스럽다. 목조건축문화재의 대부분이 소나무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느티나무, 전나무, 참나무 등을 사용한 기록도 보이며 궁궐이 아닌 사찰, 사당, 향교의 경우 느티나무가 많이 사용된 흔적이 보인다. 그러므로 목조건축문화재를 수리할 때 원자재의 수종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수리를 할 필요가 있다(박상진·정기호·김재우, 1999, 고려대장경 경판전 기둥의 재질, 목재공학 27(1) : 1~8).

표 2. 문화재용 목재와 일반 소나무, 낙엽송, 미송의 각재 가격 비교

(단위 : 원/m<sup>3</sup>)

구 분	문화재용 목재					일반소나무	미 송	낙엽 송
	일 반 재	특 수 재		특 대 재				
		I	II	I	II			
가 격	660,000	1,800,000	1,950,000	3,600,000	7,200,000	283,570	480,000	244,360

주 : 문화재용 목재 규격 : 일반재(장변 30cm미만, 길이 3.6m미만), 특수재 I(장변 30~42cm미만, 길이 3.6~7.2m), 특수재 II(장변 30~42cm미만, 길이 7.2m이상), 특대재 I(장변 42cm이상, 길이 3.6m~7.2m미만), 특대재 II(장변 42cm이상, 길이 7.2m이상), 일반소나무 규격(3.9cm×5.1cm×2.7m), 미송 규격(9.0cm×9.0cm×2.7m), 낙엽송 규격(3.9cm×5.1cm×2.7m)

자료 : 문화재용 목재가격은 대구 D재재소 '99년 10월가격, 기타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 10월호

재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국산 소나무로 수리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제도적 뒷받침은 외재의 진입이 제한된 문화재용 국산재 시장을 형성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sup>6)</sup>.

두 번째로, 문화재는 지정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공공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목조건축 문화재를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으로 마련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문화재 수리 시 발생하는 문화재용 목재 수요 역시 이 공공성에 의해 생성되는 특성을 갖게 된다.

세 번째로, 문화재용 목재는 고품질성에 그 특성이 있다. 문화재용 목재 규격은 수리 대상인 문화재의 원형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부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반용재 보다 재장(材長)이나 직경이 큰 대경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재청에서 목조건축문화재의 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소나무 고품질재 원목과 제재목의 규격은 말구직경 30cm, 45cm, 대각선길이 30cm, 45cm, 길이 360cm, 720cm를 기준으로 일반재, 특수재 및 특대재로 구분되고 있다.

그래서 문화재용 목재는 엄격한 규격기준과 함께 고품질성이 가격에 반영되어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재용 목재 중 [특대재 I]의 각재 가격은 일반 소나무, 미송 및 토목용재인 낙엽송 가격에 비해 12.7배, 7.5배, 14.7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특히 최상품인 [특대재

II]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극히 한정된 희소성 때문에, m<sup>3</sup>당 7백만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격형성은 우리 나라 소나무의 우수한 재질, 소나무 고품질재의 자원부족에 따른 희소성과 아울러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문화유산의 역사성 및 문화적 전통성을 계승하고자 하는 국민적 지불의사가 그 가격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 문화재용 목재의 수급실태

1) 문화재용 목재의 잠재 수요

문화재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이하 「국가지정문화재」라 줄여 말함)와 시도가 지정한 문화재(이하 「시도지정문화재」라 줄여 말함) 및 문화재자료 등으로 나뉘어진다. 표 3은 이러한 문화재 중 목조건축문화재<sup>7)</sup>를 유형별,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의 총수는 '97년 현재 1,791개로, 이중 14.7%인 264개가 목조건축문화재로 조사되었다. 이를 세분해 보면, 국보의 경우 총 301개중 20개(6.6%), 보물은 1,262개중 111개(8.8%), 중요민속자료는 228개중 133개(58.3%)가 목조건축문화재였다.

시도지정문화재의 총수는 3,065개로 이중 28.6%인 876개가 목조건축문화재로 조사되었다. 이를 세분해 보면, 유형문화재의 경우 총 1,650개중 572개(34.7%), 기념물은 1,145개중 147개(12.8%), 민속자료는 270개중 157개(58.1%)가 목조건축문화재였다. 이로부터 총 국가지정문화재에서 차지하는 목조건축문화재의 비중보다 총 시도지정문화재에서 차지하는 목조건축문화재의 비중이 상

6)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제6장 목공사 「수종」을 보면, 단순히 소나무라 지정한 것은 적송 또는 육송으로 한다(6-1-1), 구조재로서 소나무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의 증가를 하여 다른 목재로 대용할 수가 있다(6-1-2)고 되어 있다.

7) 목조건축문화재란 문화재의 명칭이 堂·臺·榭·齋·祠·寺·院·宇·社·宅·家·屋·館·殿·門·樓·閣·閭·房·軒·宮 등을 총칭한 것이며 건물 동수 및 규모는 고려치 않았다.

표 3. 목조건축문화재의 유형별·지역별 분포('97)

구분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총 계	
서울	23	8.7%	49	5.6%	2	0.3%	74	3.8%
부산	1	0.4%	10	1.1%	1	0.1%	12	0.6%
인천	5	1.9%	11	1.3%	22	2.8%	38	2.0%
대전	3	1.1%	13	1.5%	1	0.1%	17	0.9%
대구	0	0.0%	8	0.9%	11	1.4%	19	1.0%
광주	1	0.4%	11	1.3%	16	2.0%	28	1.4%
울산	0	0.0%	3	0.3%	2	0.3%	5	0.3%
경기	13	4.9%	35	4.0%	40	5.0%	88	4.5%
강원	8	3.0%	55	6.3%	57	7.1%	120	6.2%
충북	21	8.0%	95	10.8%	10	1.2%	126	6.5%
충남	21	8.0%	92	10.5%	108	13.5%	221	11.4%
전북	23	8.7%	62	7.1%	80	10.0%	165	8.5%
전남	42	15.9%	110	12.6%	97	12.1%	249	12.8%
경북	82	31.1%	218	24.9%	222	27.8%	522	26.9%
경남	15	5.7%	93	10.6%	129	16.2%	237	12.2%
제주	6	2.3%	11	1.3%	0	0.0%	17	0.9%
계	264	100.0%	876	100.0%	798	100.0%	1,938	100.0%

자료 : <문화재관리국, 1997, 지정문화재목록>을 재정리.

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시도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문화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상북도가 24.9%로 가장 높고 이어 전라남도(12.6%), 충청북도(10.8%), 경상남도(10.6%) 순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비중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비해 시도 지정문화재가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문화재자료는 총 1,453개로, 이중 목조건축문화재는 54.9%인 798개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상북도가 27.8%로 가장 높고 이어 경상남도(16.2%), 충청남도(13.5%), 전라남도(12.1%) 순으로써,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렇게 목조건축문화재가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은 전국적으로 문화재용 목재의 고른 잠재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경상북도, 전라남도의 경우 목조건축문화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국산 소나무 고품질재 시장이 형성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경북공, 창덕궁 등 대형 궁궐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큰 국산 소나무 수요처로 자리잡고 있다.

2) 문화재용 목재 수요('98)

현재 문화개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용 목재사용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98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문화재 목재는 원목으로 환산하여 1997년 대비 21.6%나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한 각재와 판재를 원목으로 환산하면, '98년 약 16,221m<sup>3</sup>(487만재)가 문화재용으로 사용되었다<sup>8)</sup>.

한편, 문화재청이 사용하는 목재량은 매년 목공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98년 문화재청이 사용한 목재량을 향후 10년간 사용할 목재량의 연 평균 소요량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문화재청이 산림청에 요구한 문화재 보수공사 대경목(육송) 소요량(2000~2009년의 연간 소요량)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직접 공사하는 궁·능원 문화재보수용으로 특수재 원목 538m<sup>3</sup>, 각재 122m<sup>3</sup>, 판재 63m<sup>3</sup>, 특대재 원목 191m<sup>3</sup>를 산림청에 요구하였다(문화재청, 1999, 문화재 보수공사용 대경목(육송) 소요량, 미간행). 이 양을 원목으로 환산하면(각재, 판재 체재수율 45% 가정), 특수·특대재 원목 729m<sup>3</sup>, 각재 271m<sup>3</sup>,

8) 표 4를 기본으로 하여 각재 및 판재의 체재수율을 45%라고 가정하여 추정한 수치.

표 4. 지자체의 문화재수리용 원목환산 목재사용 실적<sup>9)</sup>

(단위 : 제)

구분	합계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원목	각재	판재	원목	각재	판재	원목	각재	판재
1997	4,001,745	761,658	1,472,069	462,230	263,444	389,651	28,764	182,129	392,929	48,871
1998	4,866,541	950,203	1,794,644	571,956	265,238	409,251	38,509	194,225	586,813	55,702
증감	864,796	188,545	322,575	109,726	1,794	19,600	9,745	12,096	193,884	6,831

자료 : 문화재청 문화재기술과.

판재 140m<sup>3</sup>로, 총 1,140m<sup>3</sup>가 연 평균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재의 양은 문화재청의 직영공사인 홍례문권역 복원공사에서 사용할 총 목재량 중 일반재와 특수·특대재 비율인 25.6 : 74.4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문화재청, 홍례문 복원공사용 목재 총 물량). 그 결과 일반재는 392m<sup>3</sup>로써, 특수·특대재 소요량 1,140m<sup>3</sup>를 합치면 총 1,532m<sup>3</sup>(46만제)가 '98년 문화재청이 사용한 총 원목량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98년 지자체와 문화재청이 사용한 총 목재 사용량은 17,753m<sup>3</sup>(533만제)로, 이 중 소나무 고품질재(특수재 및 특대재)는 지자체가 사용한 총 원목량의 31.8%인 5,166m<sup>3</sup>와 문화재청이 사용한 총 원목량의 74.4%인 1,140m<sup>3</sup>를 합친 6,306m<sup>3</sup>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문화재용 목재 전량을 국산 소나무로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소나무 대경목이 점차 부족해짐에 따라 미송과 같은 외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수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63개 문화재수리업체에게 문화재 수리 시 외재 사용 비율을 질문한 결과 목재 총 구입량 중 외재를 원목 10.2%, 제재목 23.0%를 사용하였다고 답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외재사용량을 추정해 보면, 지자체가 사용한 외재는 총 원목량의 10.2%인 476m<sup>3</sup>, 총 제재목량의 23.0%인 2,657m<sup>3</sup>가 문화재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청 직영공사 중 외재 사용량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사용한 특대재량 688m<sup>3</sup>의 27%인 185m<sup>3</sup>(각주 4 참조)의 연간 평균인 23m<sup>3</sup><sup>10)</sup>로 추정되었다. 즉, 문화재청과 지자체는 총 3,156m<sup>3</sup>의 외재를 문

화재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양은 '98년 문화재용 총 목재소비량의 17.7%에 해당된다.

### 3) 문화재용 목재 공급

문화재용 목재의 공급지 및 공급량에 대해서는 기존 조사자료가 없기 때문에 산림청 임산물유통과에서 파악한 「'98국산재 생산 및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를 기초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건축용 소나무가 문화재용으로 공급되었다는 가정 하에 문화재용 목재공급지 및 공급량을 파악하였다. 앞에서 추정한 문화재용 목재소비량 17,753m<sup>3</sup>와 산림청 조사 결과인 건축용 소나무 생산량 18,734m<sup>3</sup>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문화재용 목재의 지역별 공급 비율을 산정하는 데는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98년도 도별 소나무 생산량을 보면,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용재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단지 5.1%에 불과하며 '97년 대비 3,887m<sup>3</sup>(0.5%)가 줄어들었다. 주요 생산지역은 강원도 민유림 65.7%(12,302m<sup>3</sup>), 국유림 16.7%(3,125m<sup>3</sup>)로서, 국유림의 70%가 강원도와 경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소나무 건축용재는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원도 민유림에서는 '97년 11,076m<sup>3</sup>에서 '98년 16.7%가 증가한 12,302m<sup>3</sup>의 생산량을 보였다. 이렇게 건축용 소나무 생산이 강원도로 집중되어 가는 경향은 우량 소나무 자원의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소나무 고품질재의 공급이 어려워질 것임을 예견하는 것이다.

### 4) 문화재용 목재 유통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63개 문화재수리업자에 한정되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전국의 63개 문화재수리업자를 대상으로, 1)문화재수리업자의 실태, 2)문화재용 목재의 구입실태,

9) 문화재용 목재규격은 재래단위인 척관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거래단위가 재로 이루어지므로 본 논문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를 단위로 하였다(300재=1m<sup>3</sup>).

10) 지자체의 외재사용량은 표 5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문화재청의 직영공사에 사용된 목재 중 일반재 및 특수재의 경우 외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다.

표 5. 소나무의 용도별 원목 생산량('98)

(단위 : m³)

구 분	건축용	기타	계	구 분	건축용	기타	계
민유림계	15,609	326,263	341,872	경상북도	722	14,837	15,559
경기도	332	1,316	1,648	경상남도	167	15,485	15,652
강원도	12,302	142,267	154,569	제주도	0	0	0
충청북도	350	8,092	8,442	광역시	0	2,037	2,037
충청남도	962	26,691	27,653	국유림계	3,125	21,406	24,531
전라북도	31	41,560	41,591	총 계	18,734	347,669	366,403
전라남도	743	73,978	74,721				

자료 : 산림청 임산물유통과, 「'98국산재 생산 및 이용실태 조사결과 보고」.

3)목재구입처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99년 3월 16일 총 63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총 21개 업체 (33.3%)에서 회신을 받았다.

가) 문화재수리업자의 실태

문화재수리업에 종사한 기간은 5년 이내가 4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6~10년, 21년 이상도 각각 19%를 차지하였다. 문화재수리업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익은 적지만 안정된 사업'(50.0%), '기술을 연마하기 좋은 사업'(30.0%)이라고 여기고 있었고(표 6) 문화재수리업의 수요전망에 대해서는 79%가 수요가 크게 늘어나거나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표 7). 이는 최근 들어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지역의 문화유산과 문화관광사업

표 6. 문화재수리업은 어떠한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빈 도	비 율
이익이 크고 안정된 사업	1	5.0
이익은 적지만 안정된 사업	10	50.0
이익은 크지만 불안정한 사업	1	5.0
이익도 적고 불안정한 사업	2	10.0
기술을 연마하기 좋은 사업	6	30.0

표 7. 향후 문화재수리업의 수요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빈 도	비 율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4	19.0
수요가 다소 늘어날 것이다	12	60.0
변화가 없을 것이다	1	5.0
수요가 다소 줄어들 것이다	2	10.0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1	5.0

을 연계시키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이후에도 문화재용 목재 수요가 증가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문화재용 목재의 구입실태('98)

업체별 원목 평균구입량은 약 9만재(300m³)로 조사되었다. 1만재, 10만재, 20만재를 구간으로 하여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1만재~10만재, 10만재~20만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별 제재목 평균구입량은 약 12.4만재(415m³)로 조사되었는데, 1만재, 10만재, 20만재를 구간으로 하여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1만재~10만재, 10만재~20만재를 구입하였다. 제재목 구입 비율이 높은 것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목보다는 가공된 제재목 형태로 원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지조사를 통해 문화재수리업자가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재소에서 제제한 목재를 문화재수리기능인들이 치목(治木)하여 수리현장으로 옮기는 작업방식을 취하고 있었다11).

표 8. '98년도 원목 총구입량은 얼마입니까?

구 분	원 목		제 재 목	
	빈 도	비율(%)	빈 도	비율(%)
1만재 미만	4	21.1	3	15.8
1만재~10만재	7	36.8	6	31.6
10만재~20만재	7	36.8	7	36.8
20만재 이상	1	5.3	3	15.8

목조건축문화재 중 외재를 사용하는 주요 구조재로는 1순위가 대들보(94.4%)였고 다음으로 기

11) 안동의 유창제재소, 평창의 삼일제재소 현지조사 결과임.

등(47.1%), 추녀(17.6%), 도리(17.6%) 순이었다(표 9). 대들보에 외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각재로 특대재(대각선길이 45cm 이상)가 생산 되려면 원형 기둥보다 큰 대경목이 필요하나 이 규격에 맞는 국산재를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9. 외재를 사용하는 주요 구조재는 무엇입니까?

구 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들보	17	94.4	1	5.9
서까래	1	5.6	-	-
기둥	-	-	8	47.1
도리	-	-	3	17.6
추녀	-	-	3	17.6
기타	-	-	2	11.8

외재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는 대부분 국산소나무를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0).

표 10. 외재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산소나무를 구입하기 어려움	18	94.6	0	0
국산소나무 가격이 비싸서	1	5.6	4	44.4
설계가격이 실제가격 보다 낮게 책정되어서	0	0.0	5	55.6

제재소에서 국산소나무를 구입할 때 가장 큰 애로점은 대부분이 규격에 맞는 대경목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표 11). 따라서 문화재의 수리원칙인 원형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재용 목재 중 특수재, 특대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한 현안임을 알 수 있다.

표 11. 귀사가 제재소에서 국산 소나무를 구입할 때 가장 큰 애로점?

구 분	빈도	비율
규격에 맞는 대경목을 구하기 어렵다	20	95.2
대경목을 구할 수는 있으나 길이가 맞지 않다	1	4.8

문화재용 원목 및 제재목의 주요 구입처는 제재

소가 8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목상에 게서 직접 구입하는 형태는 14.0%였다. 반면 국유림에서 직접 입목벌채하여 조달하는 경우는 원목의 경우 0.5%에 불과하였다(표 12). 이러한 사실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목재 조달의 대부분을 문화재 전문제재소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문화재용 목재수급정책을 수립하는 한 주체로서 전문제재소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표 12. 문화재용 원목 및 제재목의 주요 구입처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구 분	원 목	제 재 목
제재소에서 구입	85.5	83.0
목상	14.0	17.0
국유림에서 입찰구입	0.5	-

문화재용 목재의 구입정보(양 및 가격)는 대부분 인근 제재소에서 입수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목상에게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표 13).

표 13. 문화재수리용 목재의 구입정보(양 및 가격)는 어떻게 입수하십니까?

구 분	빈도	비율
인근 제재소에서 목상을 통해서	16	76.2
[물가정보]지를 통해서	4	19.0
	1	4.8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용 목재를 구입한다고 답한 총 35개 제재소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14개소(40%)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12개소(34%)가 분포하고 있었다(표 14).

강원도의 경우 문화재용 목재가 생산되는 자원 공급지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며, 경북의 경우는 목조건축문화재가 가장 많은 곳이라는 수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에도 1~2개의 문화재용 목재를 공급하는 제재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강원도 및 경북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2차 판매처로 볼 수 있다.

표 14. 지역별 문화재용 전문재재소

구 분	제 재 소 명	회 수
대구광역시	달성재재소(3), 제일재재소(1), 신원재재소(1), 기타(2)	7
인천광역시	기타(1)	1
광주직할시	금남재재소(2)	2
경 기 도	영성재재소(남양주, 1), 거성재재소(남양주, 1)	2
강 원 도	태창재재소(강릉, 3), 우림목재(강릉, 1), 조양재재소(강릉, 5), 백림재재소(평창, 1), 양양재재소(양양, 2), 기타(2)	14
충청남도	대전재재소(서산, 1), 기타(천안, 1)	2
전라남도	삼일재재소(나주, 1)	1
경상북도	유창재재소(안동, 1), 대성임업(영주, 2), 제일목재(칠곡, 1) 새마을재재소(경주, 1)	5
경상남도	삼화재재소(진주, 1)	1

주 : ( )의 수자는 문화재수리업자의 답변 회수임  
기타는 지역만 밝히고 구체적인 재재소명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임.

**결 론**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문화재용 목재 중 특수재·특대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목조건축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절실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재수리를 담당하는 주체인 문화재청 및 지자체와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의 긴밀한 협조하에 장기적인 문화재용 목재공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져 산림청은 향후 10년간 문화재용으로 3천m<sup>3</sup>의 목재 공급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위해 「문화재용 목재생산림」(1,200ha) 지정계획을 수립하였다. 문화재용 목재생산을 위한 용도림을 지정하자는 의견은 이미 제시된 바가 있으며<sup>12)</sup> 정책으로 입안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 조선시대의 금산(禁山), 봉산(封山)제도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소나무 고품질재 수요를 국산재로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장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을 대신하여 문화재용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방안으로 국유림에서의 “문화재용 목재생산림”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공급 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문화재용 목재생산림」에 대한 정

확한 산림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밀한 산림조사를 바탕으로 장별기택별림을 목표로 하는 영림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용 목재공급은 일반용재와 같이 민간 부문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장기간 육성이 필요한 특수재 및 특대재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문화재의 상대적 중요성과 산림자원의 공급가능성에 기초하여 공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문화재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국가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우선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 나라가 보유한 우량 소나무림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때, 공급 계획을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나라에 소량 존재하는 특대재의 벌채는 문화재의 공공성과 산림의 공공성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 선택의 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만일 어쩔 수 없이 외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후대라도 국산 소나무로 대체하여 문화적 전통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문화재용 목재생산이 절대 산림피가 아닌 문화의 재생산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수백 년간 잘 가꾸어진 산림은 그 자체로서 미래를 준비해 온 그 민족의 지혜와 저력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잘 가꾸어진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로 민족의 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창조·복원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대경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12) <배재수, 1999, 고품질재 유통, 소나무 소나무림, 임업연구원, p.130>, <배재수·김희정·백을선·박경석, 1999, 문화재용 목재의 수급에 관한 연구, 1999년도 한국임학회 하계총회 및 학술연구발표회 자료집, p.200>.



이루기 위해서는 강원도, 경북의 소나무 자원 중 대경목 생산지의 모니터링과 이를 공급해주는 별채상, 강원도, 경북 일원의 문화재용 전문재소를 고려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한다는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이 문화재 수리·복원 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청 및 문화재용 목재를 공급하는 전문재소의 의견을 수립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칭 「문화재용 목재수급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다.

### 인용문헌

1. 문화일보. 1999년 8월 20일자(홍례문 원형과 다르게 '빛나간 시공').
2. 문화재관리국. 1997. 指定文化財目錄. pp.931.
3. 문화재관리국. 1998.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및 실무요약. pp.209.
4. 문화재수리보고서. 1998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5. 박상진·정기호·김재우. 1999. 고려대장경 경판전 기둥의 재질. 목재공학 27(1): 1~8.
6. 배재수. 1999. 고품질재 유통. 소나무 소나무림. 임업연구원. pp.124-130.
7. 배재수·김외정·백을선·박경석. 1999. 문화재용 목재의 수급에 관한 연구. 1999년도 한국임학회 하계총회 및 학술연구발표회 자료집. pp.197-200.
8. 산림청. 1999. 국산재 생산 및 이용실태조사. 미간행.
9. 산림청. 문화재용 소나무 공급계획 수립. 미간행.
10. 임업연구원. 1988-1997. 기본계획구별 산림자원보고서.
11.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 1999년 10월호. pp.136.
12. 중앙일보 1999년 8월 21일자(경북궁 복원사업에 젖은 수입목재 사용)